

국 토 교 통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○○교 교량 폭 설계 부적정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고성군

내 용

고성군(○○○○과)에서는 ○○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총사업비의 60%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013. 4. 15. ○○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○에 있는 (주)○○○○○○○○(대표자 ○○○)와 2개사⁹¹⁾와 ‘○○천 하천기본계획(변경) 및 ○○○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’을 총 용역부기금액 1,014,800,000원에 도급계약 하고 같은 해 4. 19. 착수하여 2015. 12. 26. 완료하였고

위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6. 5. 9. ○○○도 ○○시 ○○구 ○○○○○○○에 있는 ○○○○○○○(주)(대표자 ○○○)와 ‘○○천 ○○○○ 조성사업’을 총 공사부기금액 6,351,890,000원에 도급계약하고, 같은 해 5. 11. 착공하여 2019. 5. 10.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, 동 공사에는 ○○교⁹²⁾ 재가설이 포함되어 있다.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, 2016. 1. 19.)」 제 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, 특정 공종의 삭제, 공정계획의 변경, 시공 방법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

91) ○○○도 ○○시 ○○구 ○○○○ ○○○에 있는 (주)○○○○○○○○(대표자 ○○○), ○○○도 ○○시 ○○구 ○○○○○○번길 ○○-○에 있는 (주)○○○○○○○○(대표자 ○○○)

92) ○○교는 현재 잠수교 형태로 교량 폭 3.3m, 연장 44.2m로 되어 있으며, 2014. 10월에 수립된 고성천 하천기본계획에는 정식교량으로 재가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

도록 규정되어 있다.

「도로설계기준」 제2장에 따르면 도로계획은 상위개발계획에서 수립된 중장기 도로망을 토대로 사회적·경제적 여건 및 도로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

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르면 설계속도가 60km/h 미만인 지방지역의 도로 차로폭은 최소 3.0m, 길어깨는 최소 1.0m, 보도는 최소 2.0m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

또한, 「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(2011. 7. 구 국토해양부)」에 따르면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, 도로 지형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 이외엔 도로 양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도로 지형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방향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.

한편 고성군에서는 ○○교와 연결되는 농어촌도로를 농어촌도로 5개년 정비계획⁹³⁾에 따라 폭 10m로 보도는 한 방향(2m)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, ○○교 보도는 교량 양측(2m×2=4m)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.

그런데 고성군에서는 ‘○○천 ○○○ ○ 정비사업’에 포함하여 설치할 예정인 ○○교(측점 0+340에서 0+380까지)를 계획하면서 ○○교 폭과 보도⁹⁴⁾ 등의 설치하는 중장기 도로망 계획과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 등에 따라 설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는데도, ○○교 차로 폭은 기준 3.0m를 0.25m 초과하는 3.25m로, 보도는 ○○교와 연결되는 농어촌도로의 한 방향(2m) 설치 계획과 달리 ○○교는 양측(4m)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 [표]와 같이 차로, 길어깨, 보도, 측대 폭 등을 기준에 맞지 않거나 주변 연결도로와 다르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○○교의 적정 폭 10.4m 보다 2.0m 넓은 12.4m로 시공할

93) 고성군에서 수립한 농어촌도로 5개년(2011년-2015년) 정비계획에는 ○○교를 포함하여 1.9km(노선번호 고성 308)에 농어촌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

94) 차로, 길어깨, 보도, 측대, 난간 등을 설치할 계획임

경우 2.0m에 해당하는 공사비 378,592,000원 상당을 낭비 할 우려가 있다

[표1] “○○교 도로 폭 변경 현황”

(단위 : m)

구 분	기준 (편도)	농어촌도로 (연결 도로)	○○교		비고
			현 설계	변경(적정)	
총 폭		10.0	12.4	10.4	
차로	3.0	3.0×2차로=6.0	3.25×2차로=6.5	3.0×2차로=6.0	
길어깨	1.0	1.0×양측=2.0	-	1.0×한 방향=1.0	
보도	2.0	2.0×한 방향=2.0	2.0×양측=4.0	2.0×한 방향=2.0	기존 농어촌 도로에는 보도가 편도에만 설치
측대	0.25	-	0.5×양측=1.0	0.5×한 방향=0.5	
난간	-	-	0.45×양측=0.9	0.45×양측=0.9	

*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

[표 2] “○○교 도로 폭 변경에 따라 공사비 변경 현황”

(단위 : 원)

구 분	○○교		공사비 증감(△)
	현 설계 (폭 12.4m)	변경(적정) (폭 10.4m)	
계	3,252,405,000	2,873,813,000	△ 378,592,000
공사비, 일반관리비 등	576,495,000	526,239,000	△ 50,256,000
관급자재비	2,675,910,000	2,347,574,000	△ 328,336,000

* 고성군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

○○교 교량 폭을 2m 축소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여 공사비 378,592,000원 상당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.